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홍익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633

발의연월일: 2021. 6. 7.

발 의 자:홍익표·강준현·김진표

문진석 • 변재일 • 안호영

이용선 · 임호선 · 진선미

한준호 · 홍성국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6·25 전몰군경 자녀 가운데 나이가 많은 1명에게만 수당을 주도록 규정합니다. 자녀 중 1명에 한정해서 이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면 그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, 현행법은 합리적 사유 없이 연장자를 우선하고 있습니다.

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이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6·25 전몰군경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나이가적은 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.

이에 6·25 전몰군경 자녀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현행법 조항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(안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16조의3제1항).

법률 제 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제3호 전단 중 "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,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보상금을"을 "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에게 보상 금을"로 한다.

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"사람 1명에게"를 "사람에게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보상금 지급순위) ① (생	제13조(보상금 지급순위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	②
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	
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	
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	3
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<u>나이가</u>	제12조
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	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
하되,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	위 유족에게 보상금을
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	
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	
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.	
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	
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	
통령령으로 정한다.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16조의3(6・25전몰군경자녀수	제16조의3(6・25전몰군경자녀수
당)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	당) ①
및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	
설립에 관한 법률」 별표에 따	
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	

순직	한 전	몰군건	경 또	는 선	근직	군
경의	자녀	중	제13:	조에	따	른
보상	금 ス]급순	위가	선선	은위	인
<u>사람</u>	1명어	<u>]게</u> 6	· 25 ²	전몰급	구경	자
녀수	당을	지급히	타되,	이 숙	누당	을
받을	권리.	는 다	른 자	녀에	게	0]
전(移	轉)되	기	아니한	다.	다	만,
유족	중	한 시	람이	보신	상금	을
지급	받고	있는	전남	골군경	불이	나
순직	군경의	자니	취에게	는 기	기급	하
지 이	-니한1	구 .				

② (생 략)

사람에게
② (현행과 같음)